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2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7. 24.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496,400원, 농어촌특별세 1,744,820원, 지방교육세 3,48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5.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redacted]군 B 임야 12,2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임야를 1차로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15. 10. 12.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0. 2015년 3월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2016년 이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C리 이장 D이 작성한 확인서와 및 공급자 E(F), 발행일 2015. 3. 20., 산양삼 종자 900g, 금액 500,000원으로 된 매입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추후 농작물 경작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추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그 후로도 2016. 5. 24., 2016. 6. 15. 이 사건 임야에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18. 1. 9. 이 사건 임야 중 1/2인 6,102㎡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2. 기존의 확인서, 산양삼 종자 매입 영수증 외에 파종한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2. 다시 이 사건 임야에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18. 5.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2인 6,102㎡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0,496,400원, 농어촌특별세 1,744,820원, 지방교육세 3,489,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15년 3월경이 사건 임야 전체에 산양삼을 파종함으로써 영농을 시작하였으나, 산양삼의 까다로운 생육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배 환경 등의 이유로 일부 토지에서 산양삼이 생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중 1/2을 미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5. 9. 22. 및 2016. 5. 24.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영농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2016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처분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이다.

3) 피고가 2016년 6월경 비과세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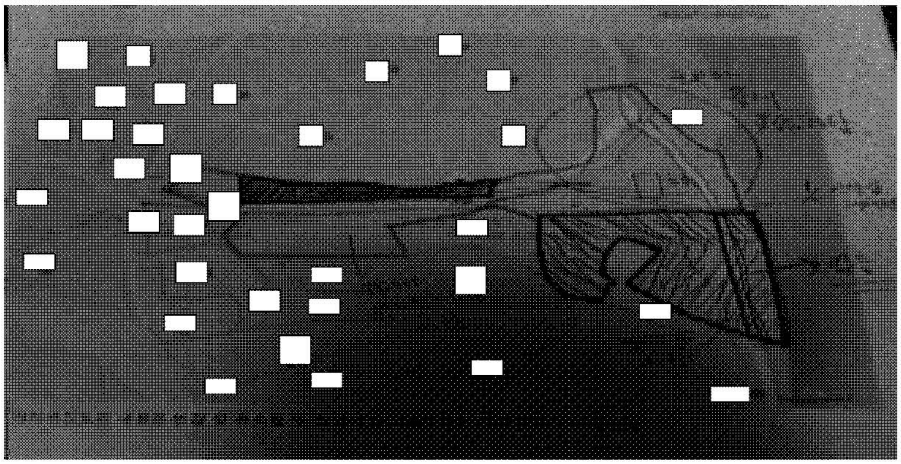
2) 을 제1, 3, 4, 6, 7, 8, 11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작성한 2015. 9. 22.자 부동산 조사서(을 제1호증)에는 '조사일 현재 자연림으로 방치하고 있고 농업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로, 2016. 5. 24.자 부동산 조사서(을 제3호증)에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 있으며 산양삼 재배지 파악이 불가능하고 위 지역은 군사시설(철조망, 참호)이 있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가 작성한 2016. 6. 15.자 부동산 조사서(을 제4호증)에는 '약 절반 정도의 면적에서 산양삼 재배지(군락지) 확인(빗금 친 지역), 산양삼 확인 안 되는 지역(빗금 안 친 지역)에 대하여는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양달 지역으로 발아하지 못하였고, 휴전선 인근 지역은 군부대에서 접근을 금지하여 파종을 못하였다고 주장함(동그라미 친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6. 15.자 부동산 조사서에 첨부된 그림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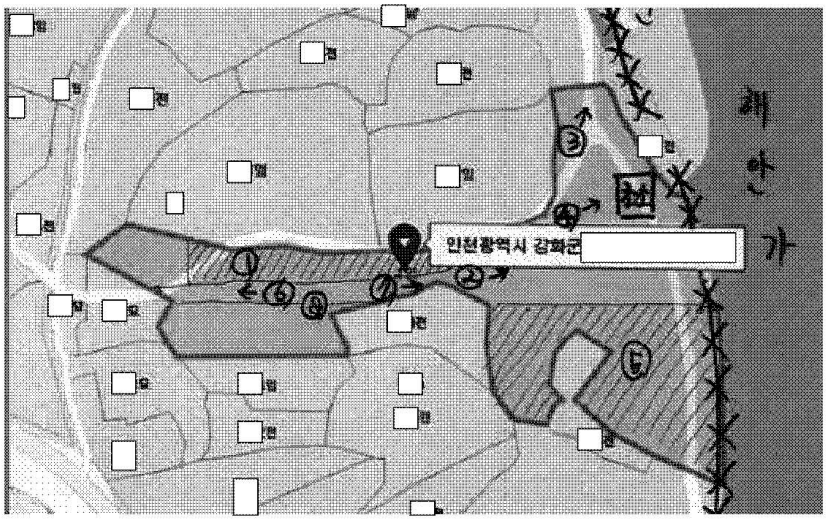
[그림1]



③ 피고가 작성한 2018. 2. 12.자 출장복명서(을 제7호증)에는 '전체적인 임야상태는 초입부터 해안가 방향까지 임야 내 2~3m 폭의 임도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가 쪽에는 군초소 1곳과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었음, 기 산양삼 재배지로 확인된 지역은 계절상 산양삼 재배 확인이 어려웠으며 일부 임도 옆에는 쓰레기 및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임도가 가로 지르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2 재배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산양삼 재배 확인이 어렵고 산양삼 재배 여건이 안 되는 구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2. 12.자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④ 피고가 작성한 2019. 12. 30.자 출장복명서(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도 임도 옆에는 쓰레기, 폐기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고, 임야 내에는 산양삼 파종지 및 재배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나 표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존재함, 기존 재배지로 확인된 일부 면적도 시멘트 길과 철책선, 순찰로, 구조물 등이 존재하여 산양삼 파종 및 재배지 여건이 안 되는 구간임을 추가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가 작성한 2020. 7. 14.자 출장복명서(을 제1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임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작물이 생육하는 시기였지만 산양삼은 확인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임도 주변엔 쓰레기, 폐기물 등이 그대로 쌓여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임야 내 산양삼 파종지 및 재배와 관련한 안내판, 표식 등 산양삼 재배 영농 관리에 관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기존 재배지로 확인된 일부 면적도 철책선을 따라 시멘트 도로와 순찰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구조물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잡풀만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산양삼 재배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산양삼을 파종 또는 이식할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생산신고를 거쳐야 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갑 제2, 16,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 제2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산양삼은 삼의 씨를 산에 심어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로 재배하는 삼을 말하는 것으로, 생육속도가 매우 느리고, 햇빛 토질, 온도, 습도 등 생육조건이 까다로워 6년근 산양삼의 생존율은 파종 대비 16.7%에 불과하고, 수확하기까지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재배 임산물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기후 및 지형 조건이 산양삼 재배지로 적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초소와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고 임도 구간이 있으며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양삼 재배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군초소와 철책선이 설치된 곳이나 임도, 쓰레기 방치 구간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고는 2016. 6. 15. 이 사건 임야 일부에서 산양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2015. 11. 10. 제출한 매입 영수증에 기재된 산양삼 종자 900g 이외에도 추가로 산양삼 종자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F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매매대금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비추어 원고는 산양삼 종자를 약 10kg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에 비추어 적은 양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산양삼 종자를 파종한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구획을 나누어 그 일부에만 산양삼 종자를 파종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산양삼의 까다로운 생육조건 등에 비추어 토양이나 지형 등의 차이로 일부 토지에서 종자가 발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⑤ 피고는 2018. 2. 12. 및 2019. 12. 30., 2020. 7. 14.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방문하여 조사한 후 산양삼 재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 2. 12. 및 2019. 12. 30.은 계절 상 산양삼 잎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때이고, 2020. 7. 14.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당시 확인된 상황으로 원고가 약 5년 전에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4)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일부에만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작성한 [그림1]이나 [그림2]는 정확한 실측 없이 어림잡아 재배지를 이 사건 임야 중 1/2로 파악한 것으로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개정 2008.2.29, 2013.3.23>]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 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끝.